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연도	2024.01.01 ~ 2024.12.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	(주)메타케어 504-81-84573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분	①요건	②검토내용	③적합여부	④적정여부
중 기 업	⑩① 사업요건	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(01) (도매 및 소매업)업 (04) 513311 (07) 19,905,968,525 (02) ()업 (05) (08) (03) 그 밖의 사업 (06) (09) 계 19,905,968,525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
	⑩② 규모요건	가. 매출액 - 당 회사 (10) (199.0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 (11) (1,000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 (12) (1,492.1 억원)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적 (Y)
	⑩③ 독립성요건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어야 할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(⑩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부 (N)
	⑩④ 유예기간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년)	(20) 적 합 (Y) 부적합 (N)	
소 기 업	⑩⑤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⑩①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⑩③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(Y) (N)	(27)
	⑩⑥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'평균매출액등' 은 '매출액' 으로 본다) 이내일 것	○ 매출액 - 당 회사 (14) (199.0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15) (50.0 억원) 이하	(22) (Y) (N)	적 (Y) 부 (N)

구분	① 요 건	②검 토 내 용	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⑩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 (N)	(28)
	⑩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 호에 적합할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(24) (Y) (N)	적 (Y)
	⑩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)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(Y) (N)	부 (N)
	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 항제1 호기목2) : 5천억원 미만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 균		
	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160.1 억원	191.0 억원	172.6 억원	174.6 억원		